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4

발의연월일: 2020. 11. 20.

발 의 자: 송재호·강훈식·김경협

김병기 · 김성주 · 김수흥

김영배 · 김종민 · 김회재

남인순 · 도종환 · 민병덕

민형배 • 박범계 • 박성준

박완주 • 박홍근 • 서삼석

서영교 · 송기헌 · 송언석

송영길 · 홍익표 · 신정훈

신현영 · 앙이원영 · 양정숙

오영훈 • 우워식 • 위성곤

윤재갑 • 윤준병 • 이광재

이병훈 • 이상헌 • 이용빈

이용선 • 이워택 • 이장섭

이해식 · 임호선 · 전재수

정청래・정춘숙・정태호

조승래 • 주철현 • 한정애

한준호 · 허 영 의원

(5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경향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하고 있는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등).
- 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

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 5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 8호)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5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 하여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초광역권의 발전 및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하여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초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3.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초광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단 중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광역협력권의"를 "초광역권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의 시·군·구의"를 "구역의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를 "지역특화산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을 "지역특화산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를 각각 "지역특화산업의"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롭게 인가하는 경우 설립 또는 인가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를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

가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 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제도·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 2.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
 - 7. 지역인구 감소대응에 관한 사항

-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초광역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10.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국가균형발전기구와 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회의)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의3(소위원회)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4(균형발전협의회)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정 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하는 균형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균형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5(자문기구)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다)으로 구성한다.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국가균형발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균형발전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3.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상임위원 2명 및 비상임위원 1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④ 그 밖의 비상임위원 3명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의 상임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⑥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26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⑦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3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23조의4(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23조의6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23조의5(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재직 중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23조의6(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

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해당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사무처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를 "생활기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광역협력권"을 "초광역권"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를 "지역특화산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각각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각각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혁신도시계정"으로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혁신도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혁신도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

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 6.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 8. 그 밖의 수입금
- ② 회계의 혁신도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 도시건설 비용
- 3. 제1항제4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4. 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비

-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의 융자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른 연 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 12.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1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1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종
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제23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위를 가지고, 위촉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위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위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혁신도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계정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1의2. (생략)
-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 ·주거·안전·환경 등의 생 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 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광역시의 군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 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 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 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

1. • 1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3.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 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

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 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생략)

5.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 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 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 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 11. (생략)

수립)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15. (생략) <신 설>

16. (생략) ③ ~ ⑤ (생 략) <신 설>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 다.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1.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초광역권의 발전 및 제10조 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 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

의하여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초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 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 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 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상호 협의·</u>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 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시·도 및 <u>광역협력권의</u> 경 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3. (생략)
- ② (생 략)
- <신 설>

		- <u>다</u>	<u>=</u>	중앙	} 행 Z	정기	관	·의
<u>장 또</u>	는	다른	시	· দূ	드지스	} ;	킛	국
<u>가</u> 균	형발	전위	원호	의	협의	의 ·	조	<u>정</u>
하여	야 현	<u> </u>	<u><후</u>	단	삭제]>		

103	조(주민	생횔	기반	- 확	충과	괴
역	발전역i	량 경	}화)	1		
						•

- 1. (현행과 같음)
- 2. -----<u>초광역권의</u>-----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하여 공동·협력 사업(이하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지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 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투 확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지</u>역투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다. ②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 진) ①	2011111111111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 진) ①	추진할 수 있다.
정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①	②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 진) 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령령으로 정한다.
진) ①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 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진) 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u>구</u> 역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 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광역 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
다)의 지역특 화산업으로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 역특화산업을 역	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u>지역투</u> <u>화산업으로</u>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지</u> 역투화산업을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화산업으로	다)의
화산업으로	
	<u>지역</u> 특
② <u>지</u> 역특화산업을	화산업으로
 역특화산업을	1. ~ 3. (현행과 같음)
	② <u> </u>
	역특화산업을

"초과역형련사언"이라 하다)은

-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 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 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 에 관한 사항
-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 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 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 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 ③ ④ (생 략)
-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④ (생 략)

1. <u>지역특화산업의</u>
 2. <u>지역특화산업의</u>
3. <u>지역특화산업의</u>
4. <u>지역특화산업의</u>
5 <u>지역특화산업의</u>
③·④ (현행과 같음)

-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④ (현 행과 같음)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 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롭게 인 가하는 경우 설립 또는 인가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 견을 듣고 해당 공공기관의 입 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지정(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국토교통</u> 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u> 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 은 경우 <u>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u>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 ④ (생 략)
-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 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

	⑥ 제5항에 따라 신설되는 공
	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세
	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균</u>
	형발전위원회에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을 듣고
	④ (현행과 같음)
제]	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u>있다</u> .

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 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 설>

-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4(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 의 실시) ① 국가균형발전위원 회는 국가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균 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의 대 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 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를 둔다.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 부조직법 | 제2조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
-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 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 획에 관한 사항
-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 한 사항
-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 용에 관한 사항
-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 항
-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육성에 관한 사항
- 10.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에 관한 사항
- 11.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 의 개발 •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

- 1.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제도·계획의 수립과 집행 에 관한 사항
- 2.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 한 사항
 -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 용에 관한 사항
 - 4.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 기업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제도 · 실태 등의 조사 ·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지역균형 뉴딜에 관한 사항
 - 7. 지역인구 감소대응에 관한 사항
 -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초광역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국 제기구 및 외국의 국가균형발 전기구와의 교류 · 협력에 관 한 사항
- 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항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 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 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사항

-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 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 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 구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현안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 조정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 제22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신 설>

<신 설>

<u>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u> 출석위원 <u>과반수의 찬성으로</u> 의결한다.

제22조의3(소위원회) 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균형발전협의회) ① 국 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하여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 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 관급으로 구성하는 균형발전협 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균형발전협의회의 구성·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자문기구) 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 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제23조(조직) ① 국가균형발전위 | 제23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으로 구성한다.

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 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 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 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2.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 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성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경 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 는 위촉한다.

- 1. 국가균형발전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3급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국가균 형발전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한 자

-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 ⑧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전문지 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 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상임위원 2명 및 비상임위원 1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의 비상임위원 3명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 촉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 직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의 상임위원중 1인은 대통령이 임 명하는 정무직 또는 전문임기 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⑥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및 제26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표하 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 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균형발 전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 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 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 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 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

<신 설>

<u><신</u>설>

다.

- 제23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23조의4(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오
 - 2. 제23조의6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23조의5(겸직금지 등) ① 위원 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재

- 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 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 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23조의6(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 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당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제26조(사무처 등) ① 국가균형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 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 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 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 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 당한다.

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 된 것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삭 제>

- ①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 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 ·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 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가균 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 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 팀을 둘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 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운용한다.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 ②·③ (생 략)
-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 지원계정, 지역지원계정, <u>제주</u>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 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저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u> <u>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u> <u>자치시계정</u>으로부터의 전입금
 - 8. ~ 12. (생략)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u>기</u>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계정의 구분)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u>.</u>
1. ~ 6. (현행과 같음)
7제주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8. ~ 12. (현행과 같음)
②
1
가
생
활기반
_

- (1) ~ (11) (생 략) 나. ~ 바. (생 략)
- 2. ~ 5. (생략)
-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u>제주</u> <u>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u>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7. (생략)
- ③ (생략)
-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 7.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제주</u> <u>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u>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8. ~ 12. (생략)
 -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역협력권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

 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

 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1) ~ (11)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u>제주</u>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1. ~ 6. (현행과 같음)
7제주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8. ~ 12. (현행과 같음)

1. 초광역권-----

2. 지역특화산업의-----

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 자

- 3. ~ 14. (생략)
-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 | 15.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16. (생략)
- ③・④ (생 략)
- 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2. -----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3. ~ 5. (생략)
 -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의 전출금
 - 5. (생략)

$3. \sim 14.$	(현행과	같음)
J. 14.	(234	石口)

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 16.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 | 세입과 세출) ① ------______

- 1. (현행과 같음)
-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3. ~ 5.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역 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혁신도시계정-----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u>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3. ~ 5. (생략)
-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u>지역</u> 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략)

③ (생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u>.</u>
1. (현행과 같음)
2 <u>지</u> 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u>및 혁신도시계정</u>
3. ~ 5. (현행과 같음)
2
1.・2. (현행과 같음)
3 <u>지</u> 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u>및 혁신도시계정</u>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혁신도시계정의 세입 과 세출) ① 회계의 혁신도시 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

- 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 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 계로부터의 전입금
-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부터의 전입금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 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
- 6.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
-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 8. 그 밖의 수입금
- ② 회계의 혁신도시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 3. 제1항제4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4. 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따른 손실금의 보전
-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 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관한 특별법」 제45조의3에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

 용에 대한 지원

-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
 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12.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
 한 경비
- 1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 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의 전출금
- 1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